○○중 학생간 학교폭력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

소송종류	민사소송	법 원 명	인천지방법원
사건번호	2014가소 ○○○○○○	사건유형	손해배상(기)
원 고	○○○	피 고	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외 3
판결선고일	2015. 4. 22	비 고	
사건개요	- 피고 ◐◐◐(당시 ■■중 3학년)는 2013.12.2.14:00경 수업시간중에 원고에게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(우)등의 상해를 입게 함. - 당시 수업담당교사(◇◇◇)에게는 피고의 행동을 방치하여 피해가 확대 된 부분에 대하여, 인천광역시 교육감에게는 위 학교의 교장이나 담임교사의 공무수행상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, 위 학교를 설치·경영하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청구의 소 제기.		
주 문	1. 피고 ◐◐◐, ◑◑◑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,993,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. 12. 2.부터 2015. 4. 22.까지는 연 5%,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2. 원고의 피고 ◐◐◐, ◑◑◑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◇◇◇, 인천광역시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		
청구취지	-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2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.12.2.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%,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		
판결이유	[피고 ◇◇◇, 인천광역시에 대한 청구] -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·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, 이러한 보호·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 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,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,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, 장소, 가해자의 분별능력, 가해자의 성행,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,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(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)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·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할 것인바, 피고 ◇◇◇의 수업 시간에 피고 ◐◐◐의 폭행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◇◇◇의 폭행행위의 발생을 예측하였다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피고 ◇◇◇에 대한 청구와 이를 전제로 한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한 청구를 기각 함.		